환경친화기업 지정요건 강화

앞으로 환경오염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조정 사건에 계류중인 기업은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될 수 없다.

환경부는 최근 제일제당 김포사업장이 벙커C유 누출로 환경친화기업지정취소 된데 따른 후속 조치로 환경친화기업지정요건을 강화했다고 9월 6일 밝혔다.

환경부는 환경문제에 대한 집단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기업에 대해 환경친화기업지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업장 주변 주민들과 마찰이 없는 기업만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또 환경친화기업 지정업체가 지정취소를 당하면 3년 동안 신청서를 낼 수 없도록 하고 지정여부를 가리는 심사과정에서 요건미비로 탈락판정을 받은 경우도 6개월간 재신청을 낼 수 없도록 제한키로 했다.

한편 환경부는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중 일부가 제출서류를 스스로 작성치 않고 용역업체에 맡겨 기업의 실상과 다른 신청서를 꾸미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신청서의 대행작성을 금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청서류의 작성을 대행토록 한 사실이 드러나면 친화기업 지정을 취소하며 향후 5년간 지정신청을 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재키로 했다.

환경부는 생산직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작업장의 환경여건과 안전관리 현황도 심사대상에 추가, 근로환경에 대한 심사도 철저히 실시키로 했다.

전국 하수관 13.2% 제구실 못한다

전국 하수관거 가운데 13.2%가 낡았거나 파손돼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월 7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에 매설된 하수관거 총연장은 4만8천6백25km에 이르고 있으나 이 가운데 13.2%에 해당하는 6천4백25km가 오래돼 낡은 노후관 또는 파손된 관거로 조사됐다. 특히 매설된지 10년이 채 안된 신규 설치 하수관거에서도 총연장 3만2천5백79km 가운데 4.4%에 이르는 1천4백33km가 파손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년은 넘었지만 20년이 안된 하수관거 역시 1만 2천4백48km 가운데 11.2%인 1천3백94km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낡았거나 파손된 하수관거 때문에 종말하수처리장에서 지하수와 계곡수 등이 다량 유입되고 있으며 이는 하수처리 효율을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수관거 노후, 파손율이 높은 것은 기존 도시 지역의 하수관거망이 하수처리보다는 빗물을 빼내 도시 침수를 막는 기능 위주로 설계된데다 시공 당시 부실시공이 많아 지하에서 관이 깨지거나 틈새가 뜬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2005년까지 9조6천억원을 들여 3만4천9백70km의 하수관거를 새로 깔고 8천8백16km의 불량 하수관을 정비한다는 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환경법령용어 31개 우리말로 순화

환경부는 9월 7일 환경법령용어 가운데 '오니, 저감방법, 유입하다' 등 일본식 표현과 한자어 31개를 우리말로 순화·정비했다.

환경부는 그동안 실·국별로 각종 환경관련 법령용어에서 일본식 표현과 난해한 한자어 등을 골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말로 순화하는 작업을 벌여 이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새로 정비한 용어는 오수→구정물, 오니→더러운 찌꺼기, 청정하다→맑고 깨끗하다, 유수분리→기름과 물분리, 방열장치→열막음장치, 유입하다→흘러들어오다 등 31개다.

순화대상 31개 용어는 다음과 같다.

대안→다른안, 도관→물관, 마모→닳아없어짐, 마쇄장치→깨뜨림장치, 방열장치→열막음장치(병행사용), 부대공사→딸린공사, 선교(선장의 지휘소)→배다리, 선주류→배종류, 수렴하다→받아모으다, 유분→기름성분, 유수분리→기름과 물분리, 유입하다→흘러들어오다, 재사용하다→다시 사용하다, 저감방법→줄이는 방법, 청정하다→맑고 깨끗하다, 축분→가축분(똥), 투영하다→비치다, 항간→항구사이, 해도→바다지도, 해수→바닷물, 돌핀(dolphin)→선박매는 말뚝, 호스(horse)→관, 나포하다→붙잡다, 범례→일러두기, 병합처리하다→함께/같이처리하다, 성상→성질과 상태, 양하→하물운반, 오니→더러운 찌꺼기(더러운 흙), 오니류→더러운 흙따위, 오수→더러운 물, 구정물(병행사용), 하청→하도급(아래도급, 밑도급)

환경범죄 적용범위 확대 처벌강화

앞으로 수질오염 사고를 일으켜 물고기가 집단폐사하면 최고 징역 7년의 중형을 받게 된다.

또 상수원을 오염시켜 상수도 원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도 최고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다.

9월 9일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범죄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해 대기, 수질, 토양오염물질이나 오수, 분뇨, 폐기물, 농약, 석유제품 등을 배출해 농토를 못쓰게 하거나 바다, 하천, 호소, 지하수를 심하게 오염시킨 경우, 또 어패류를 집단폐사하게 만든 때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이같은 오염행위로 공중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상수원 오염을 초래해 공중의 식수 사용에 위험을 발생시킨 때는 징역 1년 이하의 실형으로만 처벌하게 했다.

이에 따라 상수원 오염 범죄자는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지금까지 약식기소를 통해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치던 것이 앞으로는 실형을 선고받게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빈발하는 환경범죄로 수질오염, 재산피해, 생태계 파괴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나 현행 법률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되는데다 처벌도 비교적 가벼워 이같이 법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경비행기로 수질오염 감시

환경오염 감시에도 항공시대가 열린다.

환경부는 9월 12일 주요 하천 수질오염 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경비행기 4대를 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지난 2일 캐나다 머피사와 비행기 구입계약을 했으며 10월 19일 인도받는 대로 환경감시에 투입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환경오염 감시에 차량과 선박은 상당수 투입되고 있지만 비행기는 처음이다.

환경감시용 경비행기는 캐나다 머피사가 항공 레포츠 용으로 개발한 매버릭 기종으로 단발 프로펠러 엔진을 장착하고 1~2명이 탑승할 수 있다.

최대 항속거리가 5백km에 이르며 최대 비행시간은 5시간으로 특히 고도를 최저 20m까지 낮출 수 있는데다 이륙 활주거리가 1백m에 불과해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주로 레저용과 산불감시, 환경감시에 널리 쓰이고 있다.

환경부는 이 비행기를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에 각 1대씩 배치해 하루 2회씩 강줄기를 따라 비행하면서 감시활동을 펴도록 할 방침이다.

이처럼 항공기를 이용한 수질오염 감시는 미국 등지에서 주로 쓰이며 넓은 강폭 가운데 나타나는 기름띠나 하천변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를 적발하는데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환경부는 그러나 비행기 운용에 따른 비용과 관리를 정부에서 맡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자연보전협회에 비행기 소유와 관리를 맡기고 실제 감시 활동은 항공레포츠 동호인회 등을 통해 선발한 자원봉사자들이 나서는 방안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또 이같은 항공 감시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 6대의 비행기를 추가로 구입해 모두 10대의 항공환경감시단을 발족시키기로 했다.

'환경조사국' 신설 추진

내년부터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도·단속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9월 11일 나날이 늘어가는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고 환경조사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환경조사기능을 전담하는 환경조사국을 신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총무처에 '환경조사기능을 강화키 위한 환경조사국 신설 등을 포함한 환경기구 직제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 본부에 환경조사국을 신설하고 산하 기획과, 조사 1-2과 등 모두 3개과로 구성, 환경조사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는 것이다.

기획과는 환경오염사고의 예측·분석, 환경조사기법의 개발, 환경조사기획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조사 1-2과에서는 대기, 수질, 폐기물, 유해화학물질을 지도·점검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현재 원주지방환경청과 금강환경관리청 등이 분담하고 있는 충북지역의 환경관리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청주환경출장소를 지방환경청으로 승격시키기로 했다.

소각장 다이옥신 기준치 연내 제정

쓰레기 소각장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의 다이옥신에 대한 배출 기준치가 마련된다.

환경부는 9월 13일 도시지역 쓰레기 소각장 건설이 크게 늘어나면서 다이옥신 배출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다이옥신 배출 허용 기준을 올 연말까지 제정해 전국 쓰레기 소각장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우선 쓰레기 소각과정에서 다이옥신을 비롯한 각종 유해물질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소각 공정을 개선하기 위해 쓰레기 소각장 구조지침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새로 마련되는 구조지침은 소각장 설계와 시공, 운전 등 전 과정에서 소각 효율을 높이고 유해물질 저감을 위해 연소온도를 기존 지침보다 한결 높게 설정하고 연소연기 체류시간 연장과 여과집진 또는 전기집진시설 등 첨단 방지시설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다이옥신 저감 설계를 담은 구조지침에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치도 함께 설정해 지침에 따르지 않은 설계나 시공, 운전으로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소각장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미국과 일본, 캐나다 및 유럽국가들은 모두 쓰레기 소각시설을 비롯해 공정상 다이옥신 배출이 예상되는 시설을 다이옥신 규제시설로 정하고 따로 배출허용기준치를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주유소도 VOC 방지시설 의무

'99년부터 석유화학관련 산업체는 물론 주유소와 세탁소에도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 방지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9월 14일 환경부는 대기중 오존 발생과 악취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발생 시설에 방지시설 설치기준을 정해 오는 '99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로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업과 저유소, 세탁시설 등을 정하고 이들 시설에서는 석유 관련 제품의 제조, 저장, 출하 과정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이 대기중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석유 관련 산업체에서는 펌프에 대한 누출여부 검사 기록을 유지·보존해야 하며 압축기 등에는 봉인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개방식 밸브, 배관에는 뚜껑, 블라인드 프렌지, 마개 또는 이중밸브를 달아 누출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 산업체와 주유소의 유류 제품 저장시설에는 내부 부상형 지붕을 달아 바깥으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밀폐하도록 했다.

특히 석유류를 출하할 때에는 저장시설의 위쪽에서 퍼내는 방식이 아닌 아랫부분에 밸브를 달아 빼내는 하부적하방식을 채택해야 하며 공기중으로 새어나간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회수해 처리하는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이밖에 환경부는 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탄, 불소계 용제를 사용하는 세탁시설도 작업장 외부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밀폐형을 쓰거나 별도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회수, 처리시설을 달도록 했다.

수도권 매립지에 환경타운 건설

내년부터 수도권 매립지에 국제적 수준의 종합 환경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9월 16일 국제적 수준의 환경 연구기관 육성과 국내외 환경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도권 매립지 종합 환경단지 조성사업 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현재 인천시 서구 수도권 매립지 제2공구내 24만평 부지에 환경기술과 정책개발, 정보관리, 전문인력양성 등 환경기술 정책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공 환경단지를 조성하도록 했다.

이 환경단지에는 우선 1단계로 2001년까지 14만평 부지에 국립환경연구원, 환경공무원교육원, 환경관리공단, 한국자원재생공사 등 4개 기관을 유치키로 했다.

이어 2단계로 2005년까지 나머지 10만평에 한국환경

기술개발원, 해외환경협력센터, 재활용 종합센터, 환경홍보관, 종합환경마켓 등 5개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모두 7백45억원의 건설비가 소요되는 1단계 사업은 내년말까지 국립환경연구원 등 4개 환경부 산하기관의 부지조성 공사를 끝내고 '98년말까지 국립환경연구원과 환경공무원교육원 청사를 신축하기로 했다.

환경관리공단과 한국자원재생공사 청사는 '99년에 착공해 2000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한국환경기술개발원 등 5개 환경관련 기관에 대한 부지조성 및 신축 공사는 오는 2005년까지 마무리해 수도권 매립지를 환경타운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발주공사 환경기준 지침 제정

정부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환경훼손 예방과 생태계 복원을 위한 정부의 환경 건설기준이 만들어진다.

건설교통부는 9월 16일 정부의 각종 건설사업이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파괴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채 진행됨으로써 시화 담수호 오염 등 대형 사회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공사 환경지침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최근 건설산업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 용역결과가 나오는 내년 상반기 안에 지침 제정을 끝낼 계획이다.

현재 구상중인 정부공사의 환경지침에는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의 경우 녹지를 벨트로 구성, 녹지와 녹지끼리 서로 연결하고 녹지변에 보도를 만들어 단지 입주자들이 이질감을 덜 느끼고 자연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하천바닥 공사나 제방공사를 할 때도 콘크리트나 보도블록으로 하지 않고 자갈이나 잔디 등으로 조경, 하천생태계가 최대한 보존되도록 할 계획이다.

어류들이 댐에 막혀 하류에서 상류로 올라가지 못해 생기는 생태계 변화를 고려, 댐을 막더라도 댐 밑에 있는 물고기가 댐에 저수된 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계단식, 또는 지그재그식 어도를 별도로 만들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을 깎아 도로를 만들 때는 산토끼 등 산짐승들이 도로개설로 분리된 산 양쪽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동물통과 전용 육교 등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건교부는 모든 정부공사의 계획과 설계, 시공의 전과정에 걸쳐 환경지침을 적용해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 생태계 파괴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사전에 해소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여천공단 특별대책지역 지정

환경부는 9월 17일 여천공단 지역을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각종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은 지난 86년에 지정된 울산·온산공단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여천공단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입주업체들은 보다 강화된 '엄격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게 되며 신규 입주 및 설비 신·증설이 제한된다.

가동중인 입주업체가 적용받게 되는 '엄격배출허용기준'은 현행 ▲ 암모니아 1백ppm ▲ 염화수소 2ppm ▲ 황산화물 5백ppm에서 ▲ 암모니아 50ppm ▲ 염화수소 0.6ppm ▲ 황산화물 3백ppm 등으로 크게 강화된 기준이다.

또 환경부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및 대기 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은 원칙적으로 신규 입주 또는 신·증설을 불허하되 최적 방지시설을 설치했을 때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신규 입주나 신·증설 업체에는 벤젠화합물, 페놀화합물, 포름알데히드, 불소화물, 황화수소 등 5개 오염물질에 대해서 '엄격배출허용기준'보다 더 강화된 '특별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다.

이밖에 여천공단에서는 국내 처음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에 대한 규제가 실시되며 입주업체가 가동하고 있는 모든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정밀환경점검이 일제히 시행된다.

환경부는 여천공단지역 환경개선 종합대책의 하나로 주민들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여천공단은 물론 현재 조성중인 율촌지방공단을 끼고 있는 광양만 지역 환경영향조사도 시행해 결과에 따라 공단조성계획 재조정, 특별대책지역 추가 지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또 이번 특별대책지역 지정으로 앞으로 여천공단 확장단지에 대해서는 완충림이나 공원 등 충분한 녹지를 사전에 확보하도록 하고 확보된 녹지는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도록 못박았으며 업종별로 집단에

너지 공급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특별대책지역은 환경부장관이 환경의 오염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및 시·도지사와 협의해 지정하며 지정되면 토지이용과 시설설치 제한과 함께 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생산과정 유해폐기물 발생량 증가

폐산, 폐알카리, 폐유 등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유해폐기물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16일 환경부가 발표한 '95 전국 지정폐기물 발생·처리 현황'에 따르면 유해물질 폐기물은 지난해 모두 1백62만2천t이 발생, 전년도 1백35만1천t보다 20.1%가 늘었다.

이중 폐유기 용제는 지난해 35만3천톤으로 전년의 23만4천톤에서 무려 50.9%가 늘어났으며 이어 분진 31.8%, 폐합성수지·고무류 24%, 폐산 20.4% 등의 순이었다.

반면 폐기물 찌꺼기는 8만8천t으로 94년 9만5천t에 비해 7.4% 줄었다.

종류별 발생량은 폐산이 전체의 28%인 45만5천t으로 가장 많았으며 폐유기 용제 35만3천톤(21.8%), 폐알카리 31만5천톤(19.4%), 분진 17만톤(10.5%), 폐유 16만톤(9.9%) 등의 순이었다.

한편 유해 폐기물의 처리방법은 재활용이 78만1천톤(48.2%)으로 가장 많았고 보관 및 해양투기 50만9천톤(31.4%), 소각 25만2천톤(15.5%), 매립 8만톤(4.9%) 등이었다.

환경부는 이처럼 유해 폐기물이 증가한 이유는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한 데다 특히 석유화학업에서 폐산 및 폐유기 용제가 많이 배출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해 폐기물은 전체 배출업소의 7.7%에 해당하는 2백37개 대형 배출업소에서 지난해 1백35만3천톤을 쏟아내 총발생량의 83.4%를 차지하고 있다.

람사협약 연내 가입신청

우리나라가 연내에 습지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인 람사협약에 가입하게 된다.

람사협약은 지난 '71년 이란 람사에서 채택된 국제협약으로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습지를 보전하기 위한 정책을 가입국에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85개국이 이 협약에 가입하고 있으며 가입국가들은 의무적으로 1곳 이상의 습지를 선정해 람사협약 사무처에 등록, 보호정책을 펴야 한다.

환경부는 이 협약에 가입하면 보전가치와 훼손 우려가 높은 강원도 대암산 용늪을 등록해 집중적인 보전대책을 펴나갈 방침이다.

또 환경부는 이 협약 가입과 함께 연내에 습지보전법 제정을 마무리 짓고 습지개발 때 대체습지 마련 등 습지 보전을 위한 각종 정책도 시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에 앞서 올들어 전국 11개 주요 습지에 대한 정밀생태조사를 벌였으며 대암산 용늪에 대해서는 특별 복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당초 올 3월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에서 열린 제6차 람사협약 당사국회의 때 가입신청을 하려했으나 협약 의무조항이 개펄 매립 등 국토개발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일부 부처의 반대로 무산됐으며 이 때문에 민간 환경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투자기관 경영평가 환경점수 추가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때 환경친화적 경영을 했는지 여부도 종합점수에 반영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9월 20일 매년 실시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에 환경성 점수를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해 재정경제원 등 관련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가 마련한 정부투자기관 환경성 평가는 ▲ 환경영향평가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 재활용품 구매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지 ▲ 에너지와 물 등을 절약하려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지 등의 항목 등이다.

환경부는 현재 경상이익 증가, 각종 비용 절감, 제도개선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에 환경친화적 경영 여부를 따지는 항목을 추가할 경우 민간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